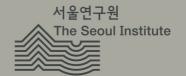


2018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박희석 정현철



CONTENTS

01 최저임금,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6%씩 인상

02 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1_서울 10개 업종 503개 소상공인 시업체 대상 실태조사 2_사업체당 평균 2.1명 고용…인건비가 운영비 51% 차지 3_사업체 54%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월 30만 원 미만 상승" 4_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대상 확대, 세제감면 희망"

03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해야 영세 소상공인 보호

1_최저임금 인상 관련 3개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_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양극화 해소 기여 3_'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감소 직접원인' 근거 부족 4_분배 강화·재정역할 확대하면 소득양극화 완화 가능

04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영세 소상공인 충격 최소화

1_소매업·음식점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 2_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카드 수수료 인하도 모색

요약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비중 큰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

과거 3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9.6% 상승하였으며, 전국의 실질성장률보다 소폭 웃도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사업체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최근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부담의 비중이 큰 영세사업체에게 부담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지원센터 확충"

연구진은 10개 업종 503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들은 업종마다 고용인원은 달랐지만 평균 2.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167.8만 원이었으며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2,530.2만 원이었으며, 사업체 운영비용은 월 평균 735.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차료는 23.1%, 전기·수도비용은 6.5%, 신용카드 수수료는 4.6% 등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항목별 지출 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당 월 30만 원 미만의 인건비가 상승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3.5%에 달하였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수익이나 비용을 조정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정책수요에서는 서울시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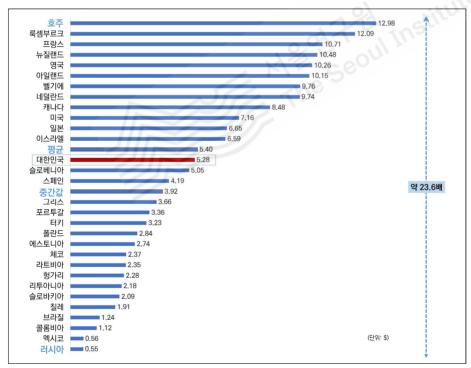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하는 다양한 대책 필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하는 관행,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등을 근절하고, 지역 단위 영세 소상공인의 협업화·협동조합화 등의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해나간다면 지금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나아질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속적인 상생협약을 맺어 급격한 임차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사업주들의 임차료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가칭)서울페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 활성화된다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확산과정에서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외부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01 / 최저임금,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6%씩 인상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열세 번째로 낮아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가 시간당 12.98달러(2015년 USD 환산 기준)로 가장 높고 러시아가 0.55달러로 가장 낮다. 30개국 평균이 시간당 5.40달러, 중간값은 3.92달러로 한국은 평균과 중간값 사이인 5.28달러이다. 2016년 기준 5.40달러는 OECD 회원국 중 열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분석에서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일부 OECD 국가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더낮은 수준이다.



[**그림 1]** OECD 회원국의 2016년 최저임금 수준

주: 호주는 2015년 자료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¹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독일은 2015년부터 최 저임금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최저임금은 1988년 시급 475원에서 2018년 시급 7,53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 시간당 475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하여 2018년 7,530원까지 약 30년간 연평균 9.6% 올랐다. 최저임금제는 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변화에 따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3차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2차례 조정이 되었으며, 조정된 구간별로 연평균 증가율이 16.2%에서 6.1%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대에 진입하면서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연평균 11.7% 상승하였다.



[그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추이

출처: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증가율은 성장률 소폭 웃돌아…근로소득 증가율 2%대 불과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2015년 물가수준 기준)은 1990년 1,701원에서 2016년 5,972원으로 연평균 4.9%를 상승하여 전국의 실질 성장률 4.6%를 소폭 웃도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실질 근로소 등 증가율은 2.9%로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저임금의 인상이 성장률을 웃돌고 있지만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10억 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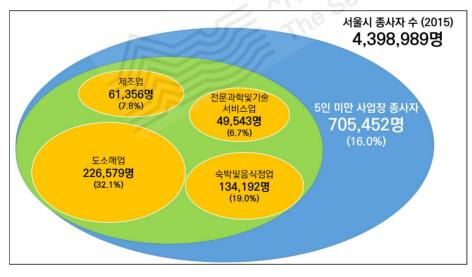
연도	전 국 실질 GDP	서 <u>울</u> 실질 GDP	실질 근로소득	실질 최저임금
1990	497,330	129,013	1,988,152	1,701
2016	1,619,842	353,650	4,190,754	5,972
연평균 증가율(%)	4.65	3.95	2.91	4.95

[표 1] 성장률과 소득수준의 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자영업, 일용직, 도매업·소매업에 몰려 있어

최저임금의 주요 대상 업종인 서울의 영세 사업체(1~4인 사업장) 종사자 수는 2015년 현재 서울 전체 산업 종사자 수의 16.0%인 705,452명이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52.7%를 차지하며, 자영업자는 26.4%,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는 5.5%, 그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5.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소매업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19.0%), 제조업 (8.7%)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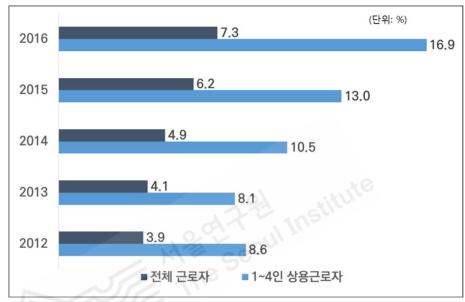
[그림 3] 2015년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2015,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종업원 1~4인 영세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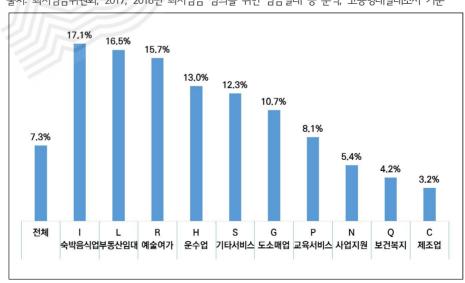
최저임금위원회(2017)에 따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한 상용근로자 수 1~4인의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2016년 6월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8.6%에서 2016년 16.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보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6 년 전체 시업체의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17.1%), 부동산임대(16.5%), 예술여가(15.7%), 운수업(13.0%), 기타서비스(12.3%), 도소매업(10.7%) 등이 비교적 높았으며, 제조업(3.2%)과 보건복지(4.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고용형태실태조사 기준



[그림 5] 2016년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고용형태실태조사 기준

02 / 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1_서울 10개 업종 503개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영에 미치는 애로사항 파악하기 위한 조사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영에 미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업종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진은 10개 업종 50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업종은 제조업 2개 업종(봉제의복 제조업 61개,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62개), 소매업 2개 업종(슈퍼마켓 30개, 체인화 편의점 65개), 음식점업 4개 업종(제과점업 51개,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 음식점업 51개, 치킨전문점 55개, 분식 및 김밥전문점 65개), 기타 2개 업종(보육시설운영업 50개, 여가관련서비 스업 13개)이다.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층화 후 계통추출의 방식으로 조사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이다.

분류	업종	표본 수(개)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61
세소급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62
НОНП А	슈퍼마켓	30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업	51
O Y 12404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 음식점업	51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55
	분식 및 김밥전문점	65
기타	보육시설운영업	50
∠ ∟	여가관련서비스업	13

- **[표 2]**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정책 등 4개 부문 25개 문항으로 구성

실태조사는 크게 ① 고용현황, ② 비용과 수익, ③ 최저임금 인상 영향, ④ 정책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은 25개다. 고용현황 부문에서는 사업체의 종사자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비용 부문에서는 사업체 운영에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비용, 수익 부문에서는 매출액·순이익·경영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부담과 대응방법·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였으며, 정책 부문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정책의 수혜 여부·평가·정책수요, 생활임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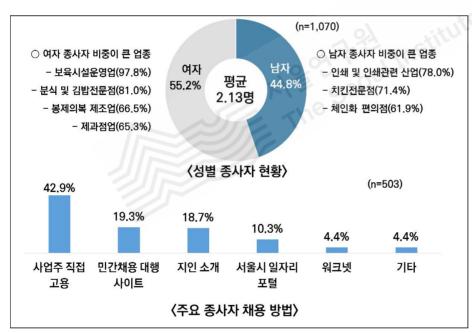
구분	주요 항목
고용현황	성별, 연령대, 고용기간, (작년·올해) 최저임금 적용 여부, 근무시간, 현재 급여(시급·월급), 채용 방식
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전기수도비용,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광고비, 신용카드 수수료, 배달료, 4대보험 비용, 기타비용(대출이자 등)
수익	매출액,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감, 순이익, 향후 경영전망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인건비 충당 방법, 인건비 지출 부담, 인건비 상승 금액, 인건비 부담 정도, 향후 1년 이내 인력 규모 전망,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 채용방식 변경 의향, 최저임금 인상 효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신청하지 않은 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점, 소상공인 지원 수혜 여부,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 서울시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생활임금 인지 여부,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견, 추후 생활임금 적용 의향

[표 3] 실태조사 주요 항목

2_사업체당 평균 2.1명 고용…이건비가 운영비 51% 차지

남성보다 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주 직접 고용이 가장 많아

조사대상 사업체 503개의 총 종사자는 1,070명으로 업체당 평균 2.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남자는 479명으로 44.8%, 여자는 591명으로 55.2%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보육시설운영업 (97.8%), 분식 및 김밥전문점(81.0%), 봉제의복 제조업(66.5%), 제과점업 (65.3%) 등은 상대적으로 여자 종업원의 비율이 높았다.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는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78.0%), 치킨전문점(71.4%), 체인화 편의점(61.9%) 등이 있다. 종사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한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민간채용대행사이트(19.3%), 지인 소개(18.7%), 서울시 일자리포털(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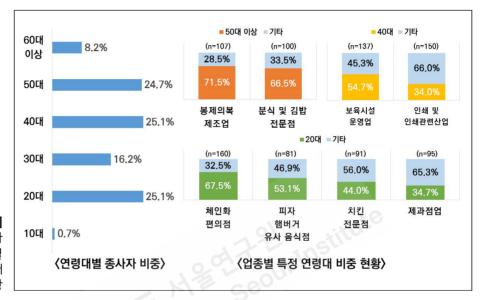


[그림 6] 성별 종사자 현황과 주요 종사자 채용방법

여령대는 업종별로 차이 있지만 40대·50대가 종사자의 절반가량 차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0대, 5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10대, 30 대, 60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종사자 중에서 40대는 25.1%, 50 대는 24.7%를 차지하였으며, 20대는 25.1%, 30대는 16.2%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8.2%, 10대는 0.7%였다. 업종별로 주로 종사하는 연령대에는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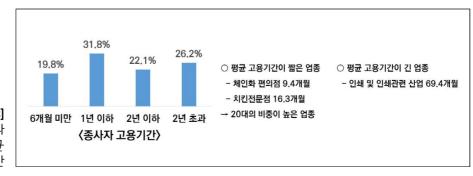
있었다.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는 체인화 편의점(6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 음식점(53.1%), 치킨전문점(44.0%), 제과점업(34.7%) 등이 있었으며, 봉제의복 제조업(71.5%)과 분식 및 김밥전문점(66.5%)은 50대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보육시설운영업(54.7%)과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34.0%)에서는 40대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그림 7] 연령대별 종사자 비중과 업종별 특정 연령대 비중 현황

근무기간은 2년 이하가 74%···편의점·치킨전문점은 20대 비중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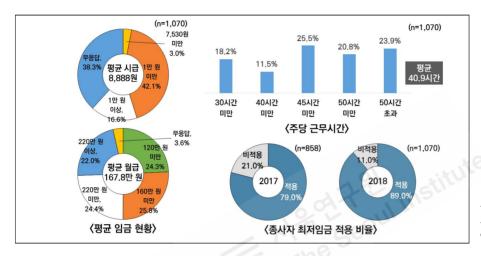
조사대상 종업원 중에서 2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은 73.7%에 달하였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6.2%에 불과하였다. 업종 중에서는 체인화편의점(9.4개월)과 치킨전문점(16.3개월)은 평균 고용기간을 크게 밑돌았으며, 이들 업종은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제조업에속하는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69.4개월)과 봉제의복 제조업(28.3개월)은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고용기간이 길었다.



[그림 8] 종사자 고용기간 업종별 평균 고용기간

종사자 평균 급여는 월급 기준 167.8만 원…대부분 최저임금 적용받아

현재 종사자들의 평균 급여는 시급 기준 8,888원이었으며, 월급 기준 1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급여 현황에 대해 월급 기준의 급여 현황은 무응답률이 3.6%에 불과하였지만 시급기준 급여는 무응답률이 38.3%에 달하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0.9시간이었으며, 종사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중은 2017년 79.0%에서 2018년에는 89.0%로 상승하였다.



[그림 9] 종시자 평균 임금, 주당근무시간 최저 임금 적용 비율

사업체 운영비용은 월평균 735.4만 원…인건비·임차료가 매우 큰 비중

조사대상 사업체는 월평균 735.4만 원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78.4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5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이 임차료 170.2만 원(23.1%), 전기·수도비용 47.7만 원(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7만 원(4.6%), 4대보험 비용 29.6만 원(4.0%), 배달료 12.8만 원(1.7%), 광고비 7.7만 원(1.1%),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7.1만 원(1.0%), 기타비용(대출이자 등) 51.5만 원(7.0%)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 항목별 사업체 월평균 운영비용

인건비,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항목별 지출비중은 업종별로 차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봉제의복 제조업(69.3%)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69.1%)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슈퍼마켓(33.0%)과 체인화 편의점(37.6%), 제과점업(35.7%), 치킨전문점(38.8%) 등은 인건비 지출 비중이 40% 이하로 낮았다. 임차료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슈퍼마켓(40.1%)과 체인화 편의점(29.8%) 등의 소매업과 제과점업(3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 음식점(28.0%), 치킨전문점(26.9%), 분식 및 김밥전문점(30.5%) 등의음식점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반면, 봉제의복 제조업(13.3%)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12.4%)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슈퍼마켓(10.1%)과 체인화 편의점(9.3%) 등의 소매업과 치킨전문점(7.7%)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7.0%) 등의 음식점업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지출 비중이 비교적 컸으며, 제조업에 해당하는 봉제의복 제조업(0.1%)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0.6%)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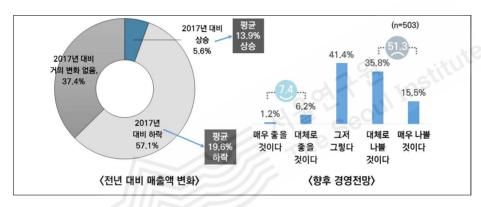
(단위: 만 원, %)

어조	인간	네	임치	៤	신용카드	- 수수료	7-1-11
업 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평균	378.5	51.5	170.3	23.1	33.7	4.6	735.5
봉제의복 제조업	600.7	69.3	114.9	13.3	1.2	0.1	867.0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689.7	69.1	123.7	12.4	6.0	0.6	998.2
슈퍼마켓	284.1	33.0	345.3	40.1	86.7	10.1	861.2
체인화 편의점	274.9	37.6	218.0	29.8	68.2	9.3	730.6
제과점업	281.3	35.7	248.4	31.5	42.2	5.4	787.6
피자·햄버거 샌드위치·유사 음식점업	248.8	41.7	167.3	28.0	41.9	7.0	596.5
치킨전문점	261.0	38.8	180.8	26.9	52.1	7.7	672.8
	260.7	45.9	173.2	30.5	33.1	5.8	568.4
보육시설 운영업	412.9	73.5	56.1	10.0	4.6	0.8	562.0
여가관련 서비스업	430.8	60.8	109.8	15.5	19.2	2.7	708.2

[표 4] 업정별 주요 항목의 지출 비중

사업체의 올해 월평균 매출은 2,530,2만 원…57%가 작년보다 매출액 줄어

시업체의 2018년 월평균 매출액은 2,530.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슈퍼마켓 (5,603.6만 원)과 체인화 편의점(3,933.9만 원)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컸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사업체는 5.6%(28개)에 불과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287개(57.1%)의 사업체가 매출액이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규모는 평균 19.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세 소상공인들의 2018년 순이익은 월평균 305.3만 원이었으며, 이익률은 12.1%로 추정되었다. 슈퍼마켓(6.5%)과 체인화편의점(8.3%)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들의 향후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좋을 것(7.4%)이라는 응답보다 나쁠 것(51.3%)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11]** 항목별 사업체 월평균 운영비용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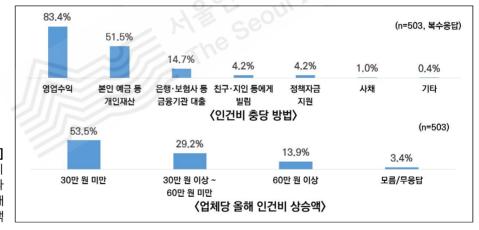
업종	매 출 액	순이익	이익 률
평균	2,530.2	305.3	12.1
봉제의복 제조업	2,132.8	274.7	12.9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434.6	292.1	12.0
슈퍼마켓	5,603.6	361.9	6.5
체인화 편의점	3,933.9	324.7	8.3
제과점업	2,391.6	322.8	13.5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	2,254.0	274.7	12.2
 치킨전문점	2,418.0	323.1	13.4
 분식 및 김밥전문점	1,645.6	293.0	17.8
 보육시설 운영업	1,038.0	257.8	24.8
여가관련 서비스업	3,904.6	608.9	15.6

[**표 5]**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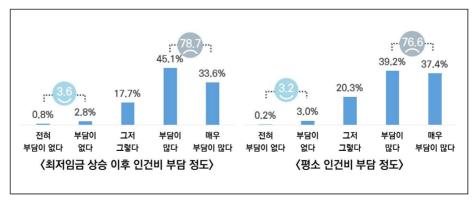
3_사업체 54%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월 30만 원 미만 상승"

사업체 대부분 영업수익, 본인예금 등 개인 재산 이용해 인건비 충당

조사대상 시업체의 대부분은 영업수익(83.4%)과 본인 예금 등 개인 재산(51.5%)을 이용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은 14.7%, 친구·지인 등에게 빌림은 4.2%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자금 지원은 4.2%에 불과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는 업체당 월30만 원 미만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만 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은 29.2%, 60만원 이상은 13.9%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정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률은 78.7%(매우 부담이 많다33.6%, 부담이 많다 45.1%)로 매우 높았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률은 3.6%(전혀 부담이 없다 0.8%, 부담이 없다 2.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평소 인건비 지출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률(매우 부담이 많다37.4%, 부담이 많다 39.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12] 인건비 충당방법과 업체당 올해 인건비 상승액



[그림 13]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인건비 부담 정도와 평소 인건비 부담정도

사업체 절반 "최저임금 지속 인상 시 1인 및 가족경영으로 바꿀 것"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채용방식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87.9%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수 익·비용을 조정하거나 폐업 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률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1인 및 가족경영(48.7%), 근로시간 단축(16.1%) 등 사업주의 근로를 늘리거나 종사자들의 근무를 줄이는 방식을 통한 인건비 측면에서의 대응방법 합계는 64.8%에 이른다. 반면, 가격인상(7.8%)을 통한 수익확대, 제반비용 축소(6.8%)를 통한 비용감소, 사업다변화(2.2%)를 통한 시장창출, 대출(1.0%)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응방법 합계는 17.7%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업종에서 인건비 측면의 대응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슈퍼마켓(73.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74.5%), 치킨전문점(72.7%) 등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14] 인건비 상승 시 대응 방안

(단위: %, n=503)

				7. %, 11–303
업종	인건비 대응 ¹	수익·비용 조정 ²	폐업	무대응
평균	64.8	17.7	8.3	9.1
봉제의복 제조업	67.2	13.1	11.5	8.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67.7	19.4	8.1	4.8
슈퍼마켓	73,3	20.0	3,3	3.3
체인화 편의점	66.2	12.3	12.3	9.2
 제과점업	66.7	21.6	5.9	5.9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	74.5	9.8	9.8	5.9
 치킨전문점	72.7	14.5	7.3	5.5
 분식 및 김밥전문점	64.6	23.1	9.2	3.1
 보육시설 운영업	32.0	26.0	6.0	36.0
여가관련 서비스업	61.5	23.1	0.0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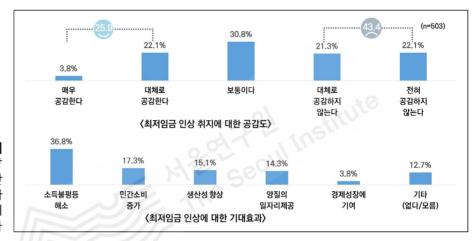
- **[표 6]** 업종별 지속적인 ⁻ 인건비 상승 시 대응방안

주1: '인건비 대응'은 '1인 및 가족경영'과 '근로시간 단축'의 합계

주2: 수익·비용 조정은 '가격인상', '제반비용 축소', '사업다변화', '대출' 등의 합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 인정 불구 공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25.9%)는 응답이 공 감하지 않는다(43.4%)는 응답보다 비중이 작았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쳐 제반비용의 증가로 수익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지 않은 비중의 공감 정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로는 소득불평등 해소(36.8%), 민간소비 증가(17.3%), 생산성 향상 (15.1%), 양질의 일자리 제공(14.3%), 경제성장에 기여(3.8%) 등의 순으로 영 세 소상공인들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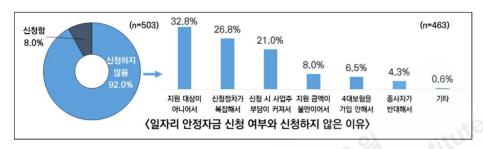


[그림 15]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한 공감도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효과

4_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대상 확대, 세제감면 희망"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이유는 지원 비대상, 신청절차 복잡 등의 순서

조사대상 시업체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는 신청했다가 8.0%, 신청하지 않았다가 92.0%로 나타났다².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32.8%), 신청절차가 복잡해서(26.8%), 신청 시 사업주가부담해야 할 몫이 증가해서(21.0%), 지원 금액이 불만이어서(8.0%), 4대보험가입을 안해서(6.5%), 종사자가 반대해서(4.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와 신청 하지 않은 이유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직전 4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

원을 받고 있는 기 수혜 사업주 또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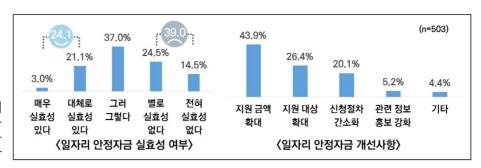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유지, 최저임

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39.0%로 조금 높았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도 24.1%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선사항으로는 지원금액 확대 43.9%, 지원대상 확대 26.4%, 신청절차의 간소화 20.1%, 관련 정보 홍보강화 5.2%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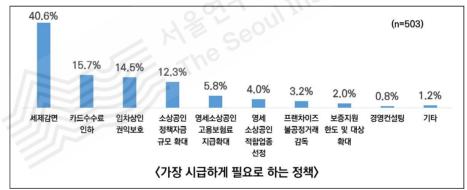
²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설문조사 시행 사업체의 모집단은 일치하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임.



[그림 17]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여부와 개선사항

시급한 정책은 세제감면 카드수수료 인하임차상인 권익보호 등의 차례

조사대상 영세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감면이 40.6%로 가장 높았다. 카드 수수료 인하(15.7%), 임차상인 권익보호 (14.5%),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12.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는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급 확대(5.8%), 영세 소상공인 적합업종 선정(4.0%),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감독(3.2%), 보증지원 한도및 대상 확대(2.0%), 경영컨설팅(0.8%)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그림 18] 지원 정책 수요

'카드 수수료 인하 희망' 응답률은 소매업·음식점업에서 비교적 높아

업종별로 살펴보면 봉제의복 제조업(57.4%)과 보육시설운영업(42.0%)에서는 세제감면을 요구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원한다는 응답률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비교적 높았다. 소매업인 슈퍼마켓(33.3%), 체인화 편의점(24.6%)과 음식점업인 제과점업(2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27.5%), 치킨전문점(18.2%), 분식 및 김밥전문점(20.0%) 등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원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제조업인 봉제의복 제조업(0.0%)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1.6%)에서는 응답률이 낮았다.

(단위: %, n=503)

업종	세제 감면	카드 수수 료 인하	임차상인 권익 <u>보호</u>	정책자금 규모확대
평균	40.6	15.7	14.5	12.3
봉제의복 제조업	57.4	0.0	6.6	16.4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43.5	1.6	22.6	16.1
슈퍼마켓	36.7	33,3	13,3	6.7
체인화 편의점	30.8	24.6	16.9	10.8
제과점업	33,3	27.5	11.8	13.7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	43.1	27.5	11.8	9.8
 치킨전문점	49.1	18.2	5.5	14.5
분식 및 김밥전문점	30.8	20.0	23,1	9.2
보육시설 운영업	42.0	2.0	16.0	10.0
여가관련 서비스업	30.8	0.0	15.4	15.4

____ **[표 7]** ___ 업종별 __ 지원정책 수요

서울시의 주요 역할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원센터·지원규모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주요 역할은 시장질서 확립과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및 지원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공정시장 질서 확립(51.1%),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48.9%), 지역상권 활성화(46.5%), 영세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40.0%), 자영업 지원·상생 강화(35.8%)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n=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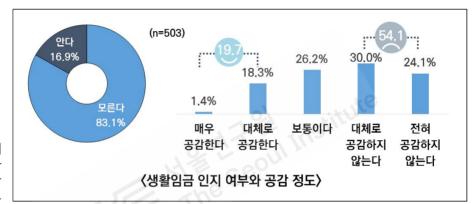
				([]	j. 70, 11 303)
 종합	1171		비	중	
순위	보기	1 순위	2 순위	3순위	종합
1	공정시장 질서 확립	26.8	18.1	6.2	51.1
2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19.1	17.1	12.7	48.9
3	지역상권 활성화	14.3	14.5	17.7	46.5
4	영세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10.1	16.1	13.7	40.0
5	자영업 지원·상생강화	9.1	10.5	16.1	35.8
6	재래시장 보호	9.3	8.0	7.8	25.0
7	신용보증재단 분원확대	4.0	5.6	6.4	15.9
8	경영지원(컨설팅·교육 등)	2.4	5.0	6.2	13.5
9	창업지원	1.6	2.6	4.6	8.7
10	유통채널 연계지원	1.4	0.8	3.4	5.6
11	우수상품 브랜드 육성지원	0.6	0.6	3.0	4.2
12	특화지역 조성	1.2	1.2	0.8	3.2

[표 8] 서울시 우선 정책순위

주: 종합순위는 1·2·3순위 답변을 더한 결과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인지도 공감대 부족하지만 향후 확산가능성 있어

조사대상 시업체 중에서 생활임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6.9%였으며, 모른다는 응답률은 83.1%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54.1%)이 공감한다는 응답률(19.7%)에 비해 높았다. 추후생활임금을 도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5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이 있으면 적용할 예정(19.3%), 경영환경이 나아지면 적용할 예정(14.5%),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다(5.2%) 등 향후 도입 의향이 있는 사업체의 총계는 39.0%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임금수준이 9,211원으로 서울시생활임금 수준 이상인 경우도 4.6%였다.



[그림 19] 생활임금 인지 여부와 공감 정도

(단위: %, n=503)

순위	보기	비중
1	추후 도입 계획이 없다	56.5
2	서울시의 지원이 있으면 적용할 예정이다	19.3
3	경영환경이 나아지면 적용할 예정이다	14.5
4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다	5.2
5	임금수준이 시급 9,211원 이상으로 이미 생활임금 적용 중이다	4.6

[표 9] 추후 생활임금 적용 의향

03 /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해야 영세 소상공인 보호

1 최저임금 인상 관련 3개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현수단…관련 이슈 정리 필요

최근 통계청은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저소 득층의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1분위의 소득이 증가하여 2분위(하위 20~40%)로 상승하였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큰축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등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관련 이슈의 정리가 필요하다.

점차 확대되는 소득양극화 진단·향후방향 등 3개 주제의 전문가 의견수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가계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일자리증가)에 대한 기여 및 역할, 두 번째는 가계소득 1분위 증가율의 급락(-8.0%)과 5분위배율(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중)이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견해, 세 번째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이다.

2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양극화 해소 기여

첫 번째 주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 여부 역할 분석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의문점은 여전히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과 가계소득 간의 관계는 불명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감소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소득 변화관계를 고려한 전체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즉, 최저임금을 이용한 획기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견 불구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시대 정책 대안으로 긍정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이견은 있지만 저성장시대에 과거와 같은 성장 전략의 한계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혁신 동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하지만 부작용은 꾸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최소화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생산성 향상의 병행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행 등 1차 분배구조 완화가 시급하다.

3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감소 직접원인' 근거 부족

두 번째 주제: 가계소득 1분위 증가율 급락 5분위배율 증가추세 진단

2018년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1분위 소득증가는 경기적 요인과 비경상소 득(대기업의 특별급여 지급이 1/4분기에 지급)의 영향이 크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임금근로가구와 고령자가구의 증가, 조사방식의 변화 등에도 영향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소득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양극화 등과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구구조 변화, 고령화, 저성장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외 경기둔화, 김영란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할 필요

소득이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감소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시점이다. 표본의 배분 기준이 2015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1분위 소득 급락 현상은 통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로 1분위에 있던 저소득층들이 2분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1분위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비경상소득이급격히 줄어들어 1분위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위 소득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급락 현상은 경기 둔화와 김영란법 등 최저임금 인상 이외의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4_분배 강화·재정역할 확대하면 소득양극화 완화 가능

세 번째 주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진단 향후 방향 점검

소득양극화 경향은 지난 30여 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된 현상이며 국 제무역·기술진보·인구구조변동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시장소득 분배는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소득의 분배보다 가처분소득의 분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소득양극화를 그대로 두기에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분배를 강화하고 재정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분배 중에서(특히 대기업의) 자본소득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불합리한 하도급 문제는 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상공인 보호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사회보장시스템 강화도 필수

고용 감소, 제품가격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악화되어 소득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소득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혁신성장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분배가 악화되고 있어 자본소득 비중 확대 문제의해결이 필요하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하도급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할과제이다.

04 /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영세 소상공인 충격 최소화

1_소매업·음식점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건비 비중 큰 영세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상위권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공감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든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감소 초래하고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영세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영세 소상 공인들은 인건비 지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 비 지출의 부담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 면 인건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시간 증가나 무급가족종사자 의 이용 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줄여나갈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된다면 고용은 감소할 것이 며, 이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해 지원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

영세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 해소, 민간소비 증가, 생산성 항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출의 부담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마냥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이 완화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안정 자금을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업종별로 달라…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작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제조업인 봉제의복 제조업과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의 인건비 비중은 각각 69.3%와 69.1%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의인건비 비중은 슈퍼마켓 33.0%, 체인화 편의점 37.6%, 제과점업 35.7%,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 41.7%, 치킨전문점 38.8%, 분식 및 김밥전문점 45.9%로 제조업에 비해 작다. 하지만 신용카드수수료의 지출 비중은 슈퍼마켓 10.1%, 체인화 편의점 9.3%, 제과점업 5.4%,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 7.0%, 치킨전문점 7.7%, 분식 및 김밥전문점 5.8% 등으로 제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무리"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 가계소득이 전 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인용하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구조적인 변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_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카드 수수료 이하도 모색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제도도입 취지와 달라 신중하게 접근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임금의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애초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일본, 미국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상황, 노사문화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에대한 노사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보다 생활임금제와같은 대안적인 임금체계의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하고 경영환경 개선도 바람직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하는 관행,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등을 근절하고, 지역 단위 영세 소상공인의 협업화·협동조합화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경영화경이 나아질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정책 접근성 높이게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로 설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정책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지원정책의 이용률은 높지 않다. 현재 지원정책은 비슷한 성격의 정책이 기관별·지역별 등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의 시행기관을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면 기존보다 수월하게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울시의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자영업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률 높일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으며,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존재한다. 지원요건(대상, 규모 등)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재검토하여 신청률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일관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책적 효과 극대화 위해 조력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책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와 신청대행기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적극 홍보하며, 신청률을 높이기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자금신청대행 서비스 시행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상생협약 맺어 임차료의 급격한 상승 막는 중재인 역할도 해야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체 운영비용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차료다. 임차료 문제는 최근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크게 주목받았다. 궁극적으로 임차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이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차소상공인의 상가매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비의 75%(최대 50억 원)를 대출금리 연 2.5%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가를 매입할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인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사업주들의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임차료 상승을 강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상생협약을 맺어 급격한 임차료 인상 을 막는 등 중재인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형가맹점보다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경감방안 필요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개편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결제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가칭) 서울페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 활성화된다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을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확산과정에서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외부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페이 도입과함께 다양한 촉진행사를 진행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서울페이 관련 협약을 맺어 가맹점에 관련 결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원정책	주요 지원 내 용	지원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자금 및 대출지원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지급대상 선정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 - 소상공인에 1조 원 특례보증 신설, 2,000억 원 일반경영자금→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 - 고용유지 시 초저금리(1.95%) 대출프로그램(1조 원) 지원	직접지원 약 3조 원
	경영비용 완화	-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고용연장지원금(2020년까지) 확대 연장 - 두루누리 사업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연매출 3억 원이하 0.8%, 3~5억 원 1.3%) -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밴(van)수수료 부과방식 정액제→정률제로 개선 - 임대료 급등지역 상생협약 시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 인하 -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을 현행 3년→5년으로 연장 -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 확대 -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 환산보증금 50% 인상, 보증금→임대료 상한율(9%→5%)	간접지원 약 1조 원 + α
[표 10]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추진 청탁금지법 보완 등 자영업자 애로 해소 뉴딜시업 내 공공상생상가 공급, 임대주택 내 착한상가 운영 9월부터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아동수당 지급 	
역 사용인 대책 대른 소용인 대책	출처: 기획재정	부, 연합뉴스(2017.7.16.), 아시아경제(2018.1.18.) 등 재정리	

서울연 2018-OR-05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고 - - - o o e 기기 경경 부남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1 의 지원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7월 12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306-8 9332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